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 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관련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법무부장관

1.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재한외국인에 대한 입국 초기 국내 사회 적응 지원

○ 사업 내용

- (대상)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연예인 등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 (내용) 입국초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제도, 필수 생활정보, 산업안전보건, 범죄예방 등을 교육 (5시간 과정)
 - ※ 체류유형별로 공통과목(4시간)과 특수과목(1시간)으로 구성 **[붙임1 참조]**
- (강사) 법무부 양성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 (운영기관) 조기적응지원단, 조기적응지원센터
- (교재) 언어별·체류유형별 교재 별도 제작·배포

○ 시행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21조

○ 운영 기관

- 종류 및 업무내용

종 류	업 무
조기적응 지원단	○ 소관 체류유형 외국인에 관한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 프로그램 교육일정 관리 및 강의콘텐츠(교재 등) 개발·출판·배포 - 조기적응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 교육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배정·관리감독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만족도 결과보고 - 분기별 사업수행결과 보고(➡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법무부 이민통합과) ○ 조기적응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
조기적응 지원센터	○ 체류유형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참여자 모집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설 -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제공 - 참여자 및 강사에 대한 출결관리, 교육이수증 발급, 만족도 조사 - 시행결과 보고(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조기적응지원단)

○ 지정 기간 : 2025. 7. 15. ~ 2027. 12. 31.

- 단, 정부 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교육실적에 따라 소정의 운영비 및 교재 지원

※ 강사비, 멘토링비는 조기적응지원단에서 강사 및 멘토에게 직접 지급

2. 운영기관 지정규모

○ 조기적응지원센터 ⇒ 85개

※ 실제 지정규모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체류 유형		모집 규모	신청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20개	교육부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대안학교,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외국인 근로자**		20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동포	중국 동포	10개	동포체류지원센터, 동포 지원단체 등
	CIS 동포	10개	
결혼이민자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외국인 유학생		10개	최근 1년 간 유학생 20명 이상 유치한 대학
밀집지역 외국인		5개	외국인 밀집지역(7천명 이상)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주민센터 및 외국인지원단체 등

3. 신청 자격

○ 신청 요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4조에
다른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 확보

- 교육장소는 최소면적 15㎡ 이상이면서 1회 교육 시 10명 이상
교육 가능해야 함

③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④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3억원 이상

⑤ 신청기관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한 기관

※ 단순한 명칭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운영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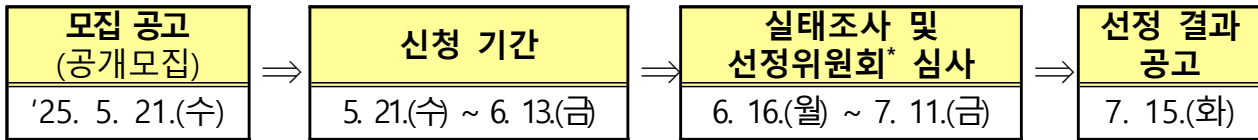
○ 신청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됨

-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 ④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철회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신청 절차

○ 공모 일정



* 조기적응지원센터는 거주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신청 기간

- 2025. 5. 21.(수) ~ 6. 13.(금) 18:00까지

※ 우편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가 도착하여야 함

○ 제출 서류

①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붙임5 참조]**

※ 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어야 함

② 운영기관(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붙임2 참조]**

③ 신청기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붙임3 참조]**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⑥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보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소재지) 보장대상 소재지 주소가 교육장소와 일치하여야 함
- (보장기간)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
 - ※ 단,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24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보장금액)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별도가입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안에 담보사항으로 확인되면 무방함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전자메일, 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중 선택

○ 신청 장소(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관서(이민통합지원센터)
 - ※ 연락처 등은 **[붙임7 참조]**, 관할구역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고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붙임4 참조**)에 따름

○ 지정 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실태조사)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 기존 조기적응지원센터는 현장방문 실사 생략 가능
- (선정심사)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 지방사회통합자문위원회(민간인 2명 포함하여 최소 5명 이내)로 구성
- (최종지정)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정

○ 지정결과 발표

- '25. 7. 15.(화)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 ※ 지정 결과만 발표하며, 신청기관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

6. 준수사항

-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무부의 교육 운영방식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이행해야 함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운영기관 참여가 금지됨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7 참고]

7. 참고사항

○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단, 이 경우 기관(단체)명은 동일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약칭 사용 및 기관명 띄어쓰기 등 주의)

○ 기존 조기적응지원센터가 운영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의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생략 가능

* 예를들어, 밀집지역 외국인 과정을 운영 중인 조기적응센터가 중도입국 청소년 과정 신청 가능

○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시 우대(예: 가점 부여) 추진

○ 향후 학부모 교육 신설 시 중도입국청소년 조기적응지원센터는 해당 교육 개설 가능

○ 참고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참고
- 기타 문의 : 지방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 7]

붙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3.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4.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5.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공문 작성요령
6. 외국인 밀집지역 해당 시 · 군 · 구
7. 지방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끝.

① 목적

-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초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제도, 의료·주거·교통·통신·생활정보 및 체류·국적 관련 법령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 (18개 언어진행)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벵골어, 라오어

② 참여 대상

- (의무참여)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자격 외국인연예인

※ 외국인등록 신청 前 반드시 참여

- (자율참여) 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재정착난민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체류기간 2년 부여(미이수하는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부여)

③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4시간) 및 체류유형별로 특화된 내용의 ‘특수과목’(1시간)으로 총 5시간 구성

※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 전문가(지자체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 기업체 안전관리·노무 담당 직원 등)가 교육 진행

4 체류유형별 교육과정(교육내용은 변동 가능)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외국인 유학생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 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인력 등 진로 소개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
	특수 과목 (1시간)	유학생 필수정보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성공적 유학생활동을 위한 조언 등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 정보
밀집 지역 외국인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중 도 입 국 청소년	공통 과목 (3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특수 과목 (1시간)	미래진로	-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 학교교육 제도 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결 혼 이민자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결혼 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정서적 공감 형성
	특수 과목 (1시간)	가족 간 상호이해	-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 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 -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및 신고절차(동영상 포함)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외국 국적 동포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범죄예방 교육	- 주요 형법의 범죄 유형 등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 이해
	특수 과목 (1시간)	국내정착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 거소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요건 - 사증발급 절차 안내
외국인 연예인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특수 과목 (1시간)	인권보호	-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 인권침해사례 및 성폭력·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구제절차 등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계절 근로자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근로현장에서의 인권보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계절근로자 체류조건, 사업장 이탈 방지, 무단이탈 시 제재 내용, 재입국 등 인센티브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특수 과목 (1시간)	계절 근로자 필수정보	- 담당 농작업 업무, 농작업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 - 지역사회 정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연락처 - 근로조건, 근무환경, 근로 시 주의사항, 통장개설 및 농작업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 변경 등 국내 체류 관련 안내 -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 및 국적 취득 요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산업안전 표지 등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범죄·화재·재난·응급구조 긴급상황 대처방법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주요 외국인 지원사업 안내 -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단체 안내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특수 과목 (1시간)	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 임금 체불 및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대처방법

이민자 유형	과목		내 용
재정착 난민	공통 과목 (4시간)	생활법률 · 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 - 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및 지원 단체 안내
		범죄예방 교육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 범죄·화재·재난·응급구조 긴급상황 대처방법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주요 외국인 지원사업 안내 -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단체 안내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특수 과목 (1시간)	국내정착	- 난민의 체류 지위, 난민의 권리와 의무, 난민 처우 등 -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 변경 등 국내 체류 관련 안내 - 영주(F-5) 체류자격 및 국적 취득 요건 - 교육제도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 취업 지원 및 보건 의료 제도 안내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명 칭 ¹⁾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개관일자	()
운영유형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외국인유학생 ☐ 밀집지역외국인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청소년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한국어 강의)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CIS국가동포, 러시아어 강의) ☐ 외국인연예인 ☐ 계절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재정착난민				
시설내역	전체 연면적		강의실		휴게실 등
	m ²		m ²	개	m ² 개
			m ²	개	m ² 개
			m ²	개	m ² 개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 명	자 격	성 명	자 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한
도

신청인¹⁾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 명칭 및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기관명으로 기재하고, 서명란에 직인 날인
※ 소속기관을 별도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명 옆에 괄호()에 병기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본 기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센터)으로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 내역

구 분	신청 내역			비고
	지원단*	지원센터 운영유형	신청여부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호텔·유형자격 외국인연예인	※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진행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중국 동포)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CIS국가 동포)		
		외국인근로자		
		재정착난민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교육	

* 지원단으로 지정 신청한 기관만 표기

첨부서류 : 1. 기관 설명 자료(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3.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4. 2022~2024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
5. 운영시설 및 장비 관련 사진
6. 교통편 및 약도.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기관 설명 자료

가. 기관 개요

- 기관명 :
- 설립일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

나. 기관 연혁 및 운영기관 신청 사유 *☞ 기관 소개 및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작성*

- 기관 설명(연혁 등)
- 운영기관 신청 사유
-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000000
 - 내용 :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나 예산 지원사업 실적(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 실적이 여러 개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만 작성

- 사업명 : 000000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근거 법령 :
 - 사업내용 및 실적 :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2. 운영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 가능)

가. 강의실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건물명	층	호실	면적(m ²)	책상·의자수 (1세트)	최대수용가능인원
예시) 산학관	2	202	50	30	50명
예시) 총계		5개실	300	150	400명

나. 사무실 및 부대시설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가능한 시설 현황만 기재

건물명	층	호실	면적(m ²)	수용가능인원	사용용도
예시) 학림관	3	302	50	30	사무실
예시) 인문관	4	402	50	30	수유실 및 어린이 놀이공간
예시) 00 프라자	5	502	50	30	휴게실
예시) 종합		5개실	150	90	-

○ 부대시설 관련 설명

-

-

다. 운영시설 총 면적 및 임대/소유 등 기재

○ 총 면적 : m² (※ 가 + 나 + 화장실, 복도 등 모두 포함)

○ 임대/소유 등 기재 : (※ 임대료 등 명시)

○ 소화기수 :

○ 비상대피로 유무 :

○ 비상대피안내도 부착(설치) 유무 :

○ 보험 관련 설명 :

라. 교육장비 현황(사무실, 강의실, 부대시설 등에 비치된 장비 현황) ☞ 조기적응프로그램

장비위치			장비구분	단위	보유수량	비고 (구입연도 등)
건물명	층	호실				
예시) 산학관	2	202	책상, 의자	조	30	2015 등
			컴퓨터	대	5	2015 등
			프린터기	대	1	2015
			복사기	대	1	2015
			전화	대	1	2015
			팩스	대	1	2015
			화재방지시설	set	1	2015
			...	...	...	...
예시) 인문관	4	402	침대	대	1	2015
			냉장고	대	1	2016
			수유기	대	1	2017
			유모차	대	1	2017
			난방기	대	1	2018
			응접set	대	1	2019
			놀이시설	set	1	2019
			화재방시시설	set	1	2000
			...	...	...	...
...						
...						
예시) 종합		0개실	책상, 의자	조	30	-
			컴퓨터	대	5	
			프린터기	대	1	
			...	...	...	
			난방기	대	1	
			응접set	대	1	
			놀이시설	set	1	
			화재방시시설	set	1	
			...	...	...	

3. 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조직 구성

(단위 : 명)

기관 부서	담당업무	구성인원	비 고
운영지원과	기획, 인사	4명	
교육운영과	교육, 협력		
회계팀	예산, 회계		
총 계			

나. 운영인력 현황

연번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직위	이메일	연락처	비 고
1	나대표	남	1950	00대 총장	ans@naver.com	000-000-0000	다문화사회전문가
2	김전담	여	1966	교육주임	ans@naver.com	000-0000-0000	한국어강사자격증
3	홍길동	남	1975	상담주임			인권강사

※ 첫 줄에는 운영기관장을 기재할 것

4. 2022년 ~ 2024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력

가. 교육과정

연도	교 육 명	개설수	총 참여자(명)	비고
2022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인유학생)	1	30	
	사회통합프로그램(1~3단계 과정)	2	40	
	외국인유학생 오리엔테이션	2	120	
2023	조기적응프로그램(결혼이민자)	5	40	
	지역주민 생활안전교육	1	20	
2024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국적동포)	2	120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과정)	1	20	

5. 운영시설 및 장비관련 사진(10장 내외)

✕	✕
건물 사진 1	건물사진 2

⌘	⌘
사무실 1	사무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편의실 1	편의실 2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장비 등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강의실1(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	강의실2(규모가 가장 작은 강의실)

6. 교통편 및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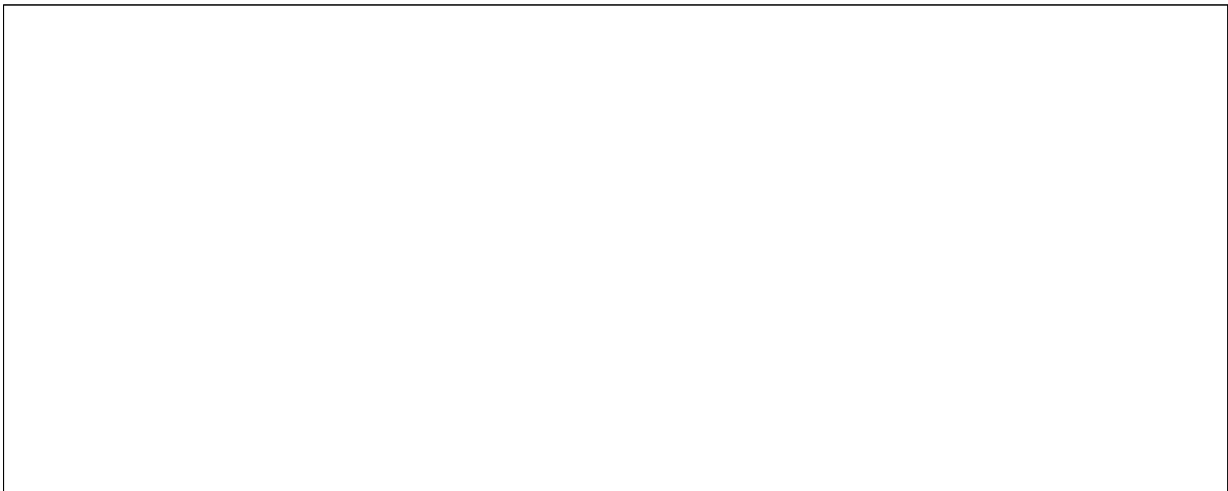
가. 주소

—

나. 시설 접근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KM 최고빌딩 7층
777번 버스 ○○역 하차 도보 1KM 경찰서 앞

다. 약도(이미지 파일로 등재)



붙임 4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심사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30)	· 사업수행 운영인력, 시설, 장비(공간, 음향, 전산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	30	30	24	18	12	6
	2. 교육경험(30)	· 최근 3년간('22~'24년)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30	30	24	18	12	6
B. 추진 체계	1. 공익성(10)	· 최근 3년간('22~'24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접근성(10)	· 교육참가자가 교육에 참여 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	10	10	8	6	4	2
C. 유기적 연계성	1. 업무연계성(10)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 국내체류동포대상 특화프로 그램 운영 등 정책 추진 시 협력 가능성	10	10	8	6	4	2
	2. 기여가능성(10)	· 최근 3년간('22~'24년)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10	8	6	4	2
총 계(100)			100	100	80	60	40	2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평가 배점과 가점의 배점의 합이 100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점으로 조정

※ 개별 평가항목 중 매우 미흡 점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나, 전체 총점이 40점 이하 인 경우는 미지정

□ 작성 방법

- 수신지정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예시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 문서제목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제출
 - 체류유형(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CIS국가동포) 중 신청하는 체류 유형에 표기(‘□’ 란을 ‘■’ 로 표기)
 - ※ 2개 이상 복수 선택 가능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 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참고 사항

- 신청 시 공문 및 붙임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A4 용지크기로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 단, 운영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라도 운영계획서 한글 파일은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공문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00출입국·외국인청장(지원단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이민통합과)

제목 :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센터 표기)지정 신청서 제출

1. 법무부 공고 제2025-198호에 따라, 2025~2027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센터)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신청유형

가. 지원단 신청

나. 지원센터 신청 시 (2개 이상 복수선택 가능)

☐ 외국인유학생

☒ 밀집지역 외국인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CIS국가동포)

붙임 : 1.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지원센터) 지정신청서

2.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신청 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5.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서류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관계 증빙 서류명. 끝.

붙임 6

외국인 밀집지역 해당 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1	경기도	화성시	35	대구광역시	달서구
2	경기도	시흥시	3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	경기도	평택시	3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	경기도	김포시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6	경상남도	김해시	4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7	충청남도	아산시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8	서울특별시	구로구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0	경상북도	경산시	44	경기도	오산시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45	서울특별시	중구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46	경기도	이천시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4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8	경기도	양주시
15	인천광역시	부평구	4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50	울산광역시	동구
17	경기도	포천시	51	전라남도	영암군
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5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3	경기도	남양주시
2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5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1	인천광역시	서구	55	울산광역시	울주군
22	경기도	파주시	56	대전광역시	유성구
23	경상남도	거제시	57	충청북도	진천군
24	경기도	광주시	58	충청남도	당진시
25	광주광역시	광산구	59	경상남도	양산시
2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60	서울특별시	성동구
27	경기도	안성시	6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8	충청남도	음성군	6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63	대구광역시	달성군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64	부산광역시	남구
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5	경기도	의정부시
32	경상북도	경주시	66	대전광역시	동구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6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4	서울특별시	용산구	68	전라남도	여수시

붙임 7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출입국 관서	접수처 (이민통합지원센터)		주 소
	전용 전화번호	전자 메 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02-2650-6217	kiipseoul@korea.kr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3층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2-6980-4802	kiipseoulsouth@korea.kr	(0779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3층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051-461-3084	kiipbusan@korea.kr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2층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032-890-6411	kiipincheon@korea.kr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3층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031-695-3821	suwonimmigration@korea.kr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364-5767	kiipansan@korea.kr	(154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064-741-5410	jeuimmigration@korea.kr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kiipdaegu@korea.kr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2-220-2190	kiipdaejeon@korea.kr	(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1-689-5516	kiipyeosu@korea.kr	(59638) 전남 여주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828-9487	kiipyangju@korea.kr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3층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2-279-8029	ulsankiip@korea.kr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1층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2-605-5210	kiipgwangju@korea.kr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5-981-6021	kiipchangwon@korea.kr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3-269-3215	kiipchuncheon@korea.kr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3-230-9081	kiipcheongju@korea.kr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3-249-8603	kiipjeonju@korea.kr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